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561

발의연월일: 2022. 5. 12.

발 의 자:홍석준·조경태·김용판

윤창현 • 김성원 • 김태호

지성호 · 김선교 · 추경호

김형동 • 류성걸 • 이종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·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며,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.

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	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
등의 설치) ① 국가ㆍ지방자치	등의 설치) ①
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	
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	
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	
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	
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	
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<u><후</u>	
<u>단 신설></u>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
	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
	<u> 여야 한다.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